
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4(해산·합병 등 인가의 심사 기준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업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

1.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고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
2. 「상법」·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
3.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,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

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합병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1.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

2. 합병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
 3. 합병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. 이 경우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 4. 합병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
 5. 합병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
 6. 「상법」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,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
 7. 자기자본비율,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
 8.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(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“대주주”를 말한다)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
 9. 그 밖에 경영건전성, 영업구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기준을 충족할 것
-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전부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것

2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 전부의 양수를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것

2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감소를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

2. 예금자 등 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

3. 자본금 감소가 「상법」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

4. 자본금 감소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자본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요건을 충족할 것

5. 자본금 감소 이후 영 제11조의7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할 것

6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”를 “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”를 “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0조의2

제3항제7호”를 “법 제10조의2제4항제7호”로 한다.

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6(신고사항)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중앙회 회장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업무방법서(표준정관을 포함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

2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100억원”을 “100억원(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직전회계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이상인 경우에는 120억원으로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2 중 “50억원”을 “50억원(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직전회계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이상인 경우에는 60억원으로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8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 한다.

4. 자산가격의 변동(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)

제22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업무방법”을 “업무방법, 정관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5호 중 “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”를 “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법 제10조의2제3항제4호”를 “법

제10조의2제4항 제4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4(해산·합병 등 인가의 심사 기준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업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</u> <u>1.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고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</u> <u>2. 「상법」·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</u> <u>3.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,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</u> <u>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합병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각 호의 심사기준</u>

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1.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

2. 합병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

3. 합병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. 이 경우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4. 합병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

5. 합병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

6. 「상법」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, 그 밖

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,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

7. 자기자본비율,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

8.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(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“대주주”를 말한다)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

9. 그 밖에 경영건전성, 영업구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기준을 충족할 것

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전부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것

2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

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전부의 양수를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것
2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감소를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
2. 예금자 등 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
3. 자본금 감소가 「상법」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
4. 자본금 감소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자본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요건을

제7조(보고사항 등) ① 법 제10조
의2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주주”란 상호저축
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
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
한 자를 말한다. 다만, 법 제10
조의2제3항제2호 및 제10조의6
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는
제외한다.

② (생략)

③ 삭 제

④ 법 제10조의2제3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· 2. (생략)

<신 설>

충족할 것

5. 자본금 감소 이후 영 제11조
의7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
율을 충족할 것

6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
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
것

제7조(보고사항 등) ① 법 제10조
의2제4항 제1호-----

법 제10조
의2제4항 제2호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10조의2제4항제7호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6(신고사항) 법 제10조의2
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

제9조(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)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“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”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1. 법인(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)에 대한 신용공여: 100
억원

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중앙회 회장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업무방법서(표준정관을 포함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
2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제9조(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) ① -----

1. -----
----- 100
억원(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직전회계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이상인 경우에

1의2. 법인이 아닌 사업자(제2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한다)에 대한 신용공여: <u>50억원</u> 2. 3. (생략) ② ~ ⑥ (생략) 제11조의2(금지 행위 등) ① ~ ⑦ (생략) ⑧ 법 제18조의2제3항 본문에서 “자기자본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	<u>는 120억원으로 한다)</u> 1의2. ----- ----- ----- --- <u>50억원(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직전회계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60억원으로 한다)</u>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1조의2(금지 행위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자산가격의 변동(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)</u> 5. ----- <u>제4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

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	----- ----- -----
제22조(중앙회의 업무 등)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1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	제22조(중앙회의 업무 등) ① --- ----- ----- -----.
1.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자율규제 업무	1. ----- ----- -----
가. 상호저축은행의 회계, 업무방법 등에 관한 표준화 및 지도	가. ----- <u>업무</u> <u>방법, 정관</u> ----- -----
나. ~ 라. (생략)	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6조(권한의 위탁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.	제26조(권한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</u> 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	5. <u>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</u> --- ----- -----
5의2. 삭제	
6. ~ 19의2. (생략)	6. ~ 19의2. (현행과 같음)

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한다. 1. (생략) 2. <u>법 제10조의2제3항제4호</u> · 제5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3. · 4. (생략)	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법 제10조의2제4항제4호</u>----- ----- 3. · 4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993